



해외 경쟁정책 동향

* 본 연합회 *

미국

요금 담합한 의사협회, FTC의 화해안에 합의

뉴멕시코 주 로스웰 지역의 의사협회와 협회 종사자 2명은 연방거래위원회(이하 FTC)와 화해안에 동의하기로 합의했다. 뉴멕시코 남서부 지방의 의사협회(이하 SENM; Southeastern New Mexico Physicians IPA) 회원들은 협회 차원에서 승인된 거래조건으로만 의료보험사들과 거래를 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가격담합과 함께 이 지역에서의 의료비를 인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FTC가 제안한 동의명령에는 협회와 그 종사자들이 장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SENM은 개업 의사들이 모인 비영리 단체로서, 68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로스웰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체 개업의사들 중 73%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FTC는

SENM의 회원들이 의료보험사와 개별적으로 거래하기를 거절하고, 그 대신 SENM의 종업원인 Barbara Gomez와 Lonnie Ray로 하여금 협회 회원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와 기타 계약 조건들에 대해 합의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Gomez와 Ray가 체결한 계약들은 모두 SENM의 위원회와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들의 승인을 얻은 후에는 SENM에서 이 계약을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 일반 회원들이 투표를 했다고 FTC는 주장했다. 이로써 피고들은 의사협회들의 요금과 기타 거래조건에 관한 담합을 조장했으며, 자신들이 정한 조건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보험사들과는 거래를 거절했다.

FTC는 SENM의 이러한 반경쟁적 행위들이 로스웰 지역 보건 분야에서의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연방거래위원회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FTC는 피고들이 의사들을 대표하여 의료보험사들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또는 특정 보험사와 거래하거나 또는 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합의를 이끄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의명령을 제안했다. 또한 피고들이 의사들과 의료보험사들의 거래조건을 정하거나 의사들이 보험사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막는 것도 금지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FTC는 Gomez와 Ray가 3년 동안 의사들을 대표하여 어떠한 협상이나 자문을 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이들이 의사들을 대표하는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FTC에 신고하도록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의 동의명령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SENM의 구성 의사들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리도록 했다.

2004. 6. 7. 연방거래위원회

연방법무부, 영화사들간 조인트 벤처에 대해 무혐의 판정

연방법무부(이하 DOJ)는 Sony (Columbia-TriStar Pictures), Warner Bros., MGM, Paramount 및 Universal 등 5대 주요 영화사들이 주문형 비디오(video-on-

demand:이하 VOD)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조인트 벤처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면서, 경쟁제한성이나 소비자후생에 피해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독점금지국은 그 동안 5대 영화사들이 설립한 합작회사인 Movielinek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어떠한 경쟁상의 문제나 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이번 조사는 합작회사의 설립이 영화사들의 결합을 촉진시키는지 여부와 영화사들이 VOD 서비스 제공업자들에게 영화 컨텐츠들을 판매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독점금지국은 반경쟁상의 몇 가지 문제들로 고민했지만 결국 합작회사의 설립으로 요금이 오르거나 Movielinek와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줄만한 증거를 포착하지 못했다. 그러나 독점금지국은 이 분야에서의 독점금지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 시장 감시를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4. 6. 3. 연방법무부

연방대법원, 외국 독점금지 소송의 미국 법원 제소에 제동

미 연방대법원은 외국인은 오직 그 반독점의 폐해가 외국에서 발생한 사건을 미국 법원에 소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판결은 미국사업자와 외국사업자에게 모두 의미 있

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비타민 가격고정 케이스에 대한 독점금지 판결들은 그 동안 사업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미국 법원이 미국 밖에서 일어난 독점금지 사건으로 외국인 고소인들에 의해 이용당할 염려가 없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상공회의소는 만일 이런 소송들을 미국 법원에서 받아준다면 미국 사법 시스템은 전세계 반독점 소송을 도맡아 해주는 형국이 될 것이며, 미국 법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선호하는 제소자들에게 좋은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외국의 반독점 집행 시스템을 무시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계 비타민 가격고정 카르텔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에서는 상당한 액수의 벌금과 손해배상으로 관심을 끈 바 있다. 이 사건에서 사업자들은 미국내에서 행한 담합을 통해 그 반독점 폐해를 오직 외국에서 발생시키고자 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으며 Stephen Breyer 대법관이 작성했는데, 여기서 연방대법원은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한 미국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한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Breyer 대법관은 외국인 구매업자들의 일부 주장에서 대해서는 미국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했다. 그는

벌크(bulk) 비타민 시장은 국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국제적 규모의 시장이기 때문에, 제약 회사들이 국내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는 그들 간의 국제 카르텔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 바이어들은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04. 6. 14. Financial Times

EU

EU위원회, 육가공 회사들 간의 기업결합 승인

EU위원회는 덴마크 도축조합인 Danish Crown이 영국 회사인 Flagship Foods를 기업결합 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영국내 Danish Crown의 비중을 더욱 증가시키기는 하지만, 여전히 경쟁이 충분히 이루질 것으로 내다보고 이루어진 조치이다.

Danish Crown은 영국의 Flagship Foods사를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지난 5월 13일 EU 기업결합규칙상의 승인절차에 따라 EU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이번 절차는 새로운 기업결합규칙이 제정된 이후, 최초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Danish Crown은 덴마크에서 가장 큰 도축조합으로서 총 20,525명의 축산농가들이 이 조합에 소나 돼지 등을 납품하고 있으며, 납품받은 동물을 도축, 가공 및 판매하는 일을 주

로 하고 있다. Flagship Foods사는 영국의 개인 기업으로서, 돼지 도축 업을 하는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자신은 가공 및 판매업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번 기업결합이 돼지고 기 생산 및 가공(베이컨 및 소시지 포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검토했는데, Danish Crown이 비록 영국 시장에서 지위가 상승하기는 할지라도 Grampian, Kerry Foods 또는 Cranswick과 같은 경쟁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EU위원회는 이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들에서 경쟁시스템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승인했다.

2004. 6. 18. EU위원회

EU위원회, 출판사간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EU위원회는 Marcel Dassault Industrial Group(이하 GIMD)이 Socopresse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을 승인했다. 그러나 GIMD는 경쟁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잡지사인 La Vie Financiere를 처분해야 한다. 지난 4월 30일 위원회는 GIMD가 Socopresse의 전체 주식을 매입하겠다는 기업결합 계획을 신고 받은 바 있다.

GIMD는 주로 항공, 컴퓨터 및 와인 생산을 하고 있는 프랑스 그룹이며, 시사지 및 경제지 등 각종 잡지도

발간하고 있다. Socopresse는 전국지 및 지방신문을 발간하고 있으며, 잡지와 기타 간행물들도 발행하고 있는 프랑스 회사이다. 이 회사는 Figaro사의 모회사이기도 하다.

EU위원회는 GIMD와 Socopresse가 기업결합을 할 경우 이들이 경제 잡지들을 통제할 것이고, 특히 광고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것에 대해 염려했다. 즉 80개가 넘는 잡지와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Socopresse의 시장력 때문에, 광고 수주에 있어서 경쟁상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되었다.

따라서 이번 기업결합은 프랑스 경제관련 잡지의 광고 판매시장에 있어서 경쟁의 폐해를 일으킬 것으로 보았다. 어떠한 경쟁자나 광고대행업자도 거의 50%의 결합시장점유율을 보유한 Socopresse와 GIMD에 견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GIMD는 경제관련 잡지들을 처분하기로 결정했고, 위원회는 그렇게 하는 경우 경쟁제한의 우려가 사라질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처분되는 잡지사의 기자들을 포함한 종사자들의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출판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위원회는 기존의 출판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구매자를 찾기를 기대하고 있다.

2004. 6. 17. EU위원회

EU위원회, 독일 연방카르텔청에 경쟁제한성 분석 의뢰

EU위원회는 KDG사가 독일 북부 라인-베스트팔렌 지방에서 광대역 케이블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있는 ish GmbH & Co. KG와 ish KS NRW GmbH & Co. KG의 기업결합 계획 신고를 받고, 이 사건 조사를 독일 연방카르텔청에 의뢰했다. 이에 연방카르텔청은 이번 기업결합이 TV와 라디오 신호 전송 시장 및 관련 서비스 시장 등에서 결합기업인 KDG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판단했다.

KDG는 헤센, 바덴-뷔템부르크 및 북부 라인-베스트팔렌 지방을 제외한 독일 지역에서 도이치 텔레콤의 계열사로서 광대역 케이블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에서는 ish가 광대역 케이블 사업을 하고 있다. 이 두 회사들은 자신이 활동하는 지역에서 방송 신호를 전송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접속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신고 된 바에 따르면, KDG는 ish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다른 지역에서 케이블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두 사업자까지 합병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KDG나 ish의 기업결합 사건에서와는 달리, 이 기업결합 사례에서는 EU위원회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이 사건은 연방카르텔청에 신고 접수

되었다.

2004년 5월 14일 연방카르텔청은 EU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서는 이번 기업결합은 몇 개의 시장에서 시장지배적지위가 강화될 것이라는 견해를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방송사들이 광대역 케이블을 통해 전송을 받는 시장에서는 두 개의 네트워크가 합쳐짐으로써 시장지배적지위가 강화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디지털 유료 TV 시장, 택내에게까지 방송 신호를 전송해 주는 케이블 시스템 시장 및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신호를 전송해 주는 시장에서도 KDG가 ish를 기업결합 하여 경쟁자가 사라지게 되는 한, 이미 일부 지역에서 지배적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KDG의 시장지배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고 경쟁은 제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U위원회는 독일 연방카르텔청이 지역 시장과 특수한 국내 사정을 잘 고려하여 경쟁제한성을 사전 심사하기에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고 국내 카르텔 당국에 심사를 의뢰한 것이다. 또한 KDG가 매수하고자 하는 여러 기업결합 사건들을 일괄적으로 동일한 규제당국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에서 이번 사건을 연방카르텔청에 맡겼던 것이다.

2004. 6. 8. EU위원회

인터넷 판매에 의한 항공요금 차별 문제 애소

2003년 12월 EU위원회는 18개 유럽 지역 항공사로부터 자국민에 대한 항공 요금의 차이, 특히 인터넷 판매에 따른 요금 차이에 관한 정보를 요구한 바 있었다. 위원회의 요금 조사로 인해 항공 요금의 차이는 상당히 사라졌다.

그 당시 위원회는 18개 항공사에 대해 고객의 국적별로 정확히 얼마만큼의 요금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경우 왜 요금에 있어 차이를 두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했다.

이러한 위원회의 조치는 항공권을 구입하는, 특히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는 이용객들의 불만이 급격히 증가되면서 취해진 것이었다. 항공사들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주소지나 신용 카드의 주소지로써 고객의 주소지를 결정한다. 그리고 그 주소지가 속한 국가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다른 요금을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요금의 차이는 최대 3배에 이르기도 한다.

위원회에 접수된 불만은 동일한 항공권에 관한 것이었다. 따라서 구매 일이 달라서 요금 차이가 있다든지, 예약 변경으로 인한 차이라든지 또는 기타 서비스의 차이로 인한 요금 차이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였던 것이다. 요금 차이는 전적으로 항공권 구매자의 주소지에 따른 것이었다.

지난 4월 말 EU위원회는 18개 항공사 중 16개 항공사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이 중 대부분은 거주지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으며, 몇몇 사업자들은 과거에 거주지에 따른 요금 차별을 했었으나 지금은 더 이상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예약 기록을 검토한 결과 실제로 그러한 것으로 밝혀졌다.

매우 드물지만 전자식 발권이 아닌 수동 발권의 경우에는 가격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대체로 항공 요금은 이제 전체 EU 역내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U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항공 요금 차별에 관한 모니터링을 하여 거주지에 근거한 요금 차별을 막을 계획이다.

2004. 6. 7. EU위원회

독일

연방카르텔청, 철도회사 DB의 지방 운송회사 지배 반대

연방카르텔청은 Deutsche Bahn AG(이하 DB)가 자신의 계열사로서 시외버스 사업을 하고 있는 Saar-Westpfalz GmbH(이하 RSW)를 통해 지방 운송회사인 Kreis-Verkehrsbetriebe Saarlouis GmbH(이하 KVS)의 주식 중 30%를 취득하려는 계획을 금지시켰다.

KVS는 주로 자아란트(Saarland) 지방에서 그 지역 운송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이다.

DB가 시도한 기업결합 계획이 자아란트 지방에서의 공공운송 시장에서 DB의 시장지배적지위를 강화시킬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RSW는 자아란트 지방에서 10개의 시외 노선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몇 개의 노선(시내노선 포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지역에서 4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DB는 지방 철도 여객 운송에서 시장점유율이 90%가 넘는다. 만일 이 기업결합이 이루어 진다면 DB는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이들이 결합하는 경우 상호간 경쟁은 더 이상 기대하기가 어려워지고, 결국 경쟁의 강도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연장카르텔청장은 “특히 시장집중이 심화되고 경쟁의 강도가 약화된 시장에서는 기업결합 규제를 통해서 남아있는 경쟁이라도 보호해 줄 필요가 있으며, 개방화를 통해 시장을 열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04. 6. 15. 연방카르텔청

일본

공정위, 예방접종 요금 담합한 의사회에 권고

공정취인위원회는 사단법인 옻카이치 의사회(이하 옻카이치 의사회)에

대해 독점금지법 제8조(사업자단체의 금지 행위)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권고 조치했다.

온카이치 의사회는 2002년 10월 15일 무렵에 개최한 이사회에서 같은 해 10월 이후부터 65세 미만의 접종자들에게 행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요금을 1건당 3,800엔 이상으로 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옻카이치 지역내에 있어서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거래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해 왔다.

또한 옻카이치 의사회는 의료기관 개설상담위원회 내규에 근거하여 의사회 회원들의 의료기관의 개설, 진료과목의 증설 및 병상의 증상을 제한함으로써, 회원의 기능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었다.

이에 공정취인위원회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요금의 결정과 관련해서는, 의사회의 요금담합 결정을 파기하고, 향후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과 동시에 그 사실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주지시킬 것을 권고했다.

또한 회원의 기능 활동의 제한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 개설상담위원회 내규를 파기하고 이에 근거한 행위들을 취소할 것을 명령했다. 그리고 향후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과 그 사실을 의사회 회원 및 그 지역에 거주하는 회원이 아닌 의사들에게 통지할 것도 권고했다.

이러한 권고를 응낙했을 때에는 권고와 같은 취지의 심리판결을 실시하

며, 만일 이를 수락하지 않을 때에는 심판 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2004. 6. 21. 공정취인위원회

「전기통신사업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의 측진에 관한지침」 일부 개정

공정취인위원회는 2001년 11월 총무성과 공동으로 전기통신사업 분야에 있어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독점금지법과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기본적 관점과 문제 행위 등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의 측진에 관한지침」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2002년 12월에는 법운용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을 실시했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이 4월에 개정됨으로써, 공정취인위원회는 이 법의 개정에 수반하는 규정의 수정 및 독점금지법의 운용 사례를 문제 행위에 추가 등의 일부 개정을 총무성과 공동으로 작업하여 이를 공표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전기통신사업 분야에 있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확보하기 위해, 이 지침에 근거하여 독점금지법 위반행위를 엄정·신속히 배제해 나아감과 동시에, 사전방지에 노력할 것이다. 또한 향후 전기통신사업 분야에 있어서의 경쟁 환경의 변화나 위원회의 위반사건 처리의 경험 등을 근거로 하여 이 지침을 수시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2004. 6. 18. 공정취인위원회

공취위, 「적정한가스거래에대한 지침」 개정안 마련

공정취인위원회는 2000년 3월 통상산업성(現 경제산업성)과 공동으로, 가스 시장에 있어서 공정하고 유효한 경쟁의 촉진을 위해 독점금지법상 또는 가스사업법상 문제가 되는 행위 등을 사전에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제하기 위해서 「적정한가스거래에대한지침」을 작성했다.

그러나 올 해 4월에 가스사업법이 개정되어 시행되었고 가스사업제도가 개혁된 지 4년 이상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상당 사례도 많이 축적되어 이러한 사례들을 근거로 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

이번 개정 원안에 독점금지법 관련 부분으로서 추가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매 자유화 분야에서의 적정한 가스 거래 관련

- 공급구역내에 있어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는 일반 가스 사업자가 일정한 행위를 부당하게 하여 신규 참가자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것 등은 독점금지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행위 유형에 해당
- 다른 사업 분야에서 독점적인 지

위를 가지는 사업자가 그 독점력을 이용하거나, 부당하게, 또는 수요가(需要家)에 대해서 이익을 제공하는 것 등에 의해 가스 시장의 거래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는 것은 독점금지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행위 유형에 해당

2. 도매 분야에 있어서의 적정한 가스 거래 관련

- 도매사업자가 해당 도매사업자 이외에서는 가스를 조달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일반 가스 사업자에 대해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것 등은 독점금지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행위 유형에 해당

3. LNG 기지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적정한 가스 거래 관련

- LNG 기지를 보유 또는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기지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사업활동을 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쟁 가스 사업자의 이용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것 등은 독점금지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행위 유형에 해당

향후 공정취인위원회는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들을 근거로 경제산업성과 공동으로 개정 지침을 제정·공표할 예정이다.

2004. 6. 15. 공정취인위원회

공취위, 「기업결합심사에관한독점금지법의운용지침」 공표

공정취인위원회는 기업결합심사에 관한독점금지법의운용지침(이하 「운용 지침」)을 공표했다. 이 운용 지침을 제정함에 따라 「주식보유, 합병 등과 관련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경우」에 관한 지침(1998년 12월 21일 제정)은 폐지된다.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이하 「기업 결합심사」)에서, 공정취인위원회는 지금까지 가이드라인의 작성이나 중요 안건의 공표 등을 통해서 심사 내용의 투명화·명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거래분야의 확정(이른바 시장획정)이나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되는 경우 등에 관해서 기업결합심사의 투명성을 한층 확보하여 예전 가능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요청이 각 방면에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 2004년 3월 23일 운용 지침의 원안을 마련·공표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요구했다. 이번 의견 모집에서는 원안에 대해서 7명(사업자단체, 사업자 및 개인)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었고, 위원회는 이러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원안에 일부 수정을 더하여 운용 지침을 정리했다.

2004. 5. 31. 공정취인위원회